

예 산 총 칙

제1조 (예산의 규모) 코스모요양원 의 2025년도 예산 총액은 세입·세출 각각 1,293,657 천원으로 한다.

제2조 (예산의 내역)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1. 세입의 주요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부담수입	146,514 천원	2) 보조금수입	16,080 천원
3) 후원금수입	천원	4) 요양급여수입	887,873 천원
5) 이월금	58,000 천원	6) 잡수입	15,240 천원

2.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건비	786,315 천원	2) 업무추진비	6,000 천원
3) 사무운영비	96,000 천원	4) 시설비	30,000 천원
5) 사업운영비	211,470 천원	6) 사업비	12,000 천원
7) 잡지출	1,872 천원	8) 예비비및기타	6,000 천원
9) 이월금	천원		

제3조 (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확정한다.

단, 국가 또는 지자체로 받은 보조금 및 지정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은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이라도 보조 및 후원목적에 적절한 경우 먼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예산의 전용) 세출경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항·목 간의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전용할 수 있다. 관간의 전용과 동일관내의 항간의 전용은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항 간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과목 전용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의 집행)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한다.